

☐ 주요골자

- 조례 제2조의 구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은 91. 4. 15일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시 산하 모든 행정의 중요시책을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맡겨져야 됨.
- 위원회를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행정의 전반적인 중요시책을 자문받아 구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자세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능동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됨

부천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243
의 결 년 월 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이유

입선 시·군에 통합운영 관리되어 왔던 소방행정이 법률 제4419호(91. 12. 14)로 광역소방행정 제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의 화재예방조례의 적용을 받는바 종전 부천시화재예방조례는 그 적용의 필요성 소멸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법률 제4419(92. 12. 14) 시·군의 소방행정 업무가 광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적용을 받던 현행 부천시화재예방조례는 그 적용의 필요성 소멸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☐ 법적근거

법률 제4419(91. 12. 14)공포 : 광역소방체제로 전환

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화재예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244
의결 년 월 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 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이유

- 제해 또는 기타 사유로 전량된 농가에 한하여 식량을 대여하고자 73. 7. 1. 사환곡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나,
- 현재 양곡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국비로 양곡 대여토록 추진하고 있어 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를 폐지하여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함.

☐ 주요급자

- 시행일 :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
☐ 법적근거

양곡관리법 제6조의 2

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